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10
----------	-----

2019년 4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28일, 송정빈 의원 외 17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4월 19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송정빈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수렴 결과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변경('18.4.4)하도록 함에 따라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함(안 제5조제3항)
-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제4항 신설)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수렴 결과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일 1회에서 1개월 1회로 변경('18.4.4)하도록 3개 시·도에 요청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시 전 지역을 말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미개조(교체)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해당됨.

#### 〈공해차량제한지역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비교〉

구 분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시 기	○ 상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 역	○ 서울시 전 지역	○ 서울시 전 지역
대 상	○ '05년 이전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	○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차량
처 분	○ 1차 경고(30일) ○ 2차 20만원(최대 200만원)	○ 경고 없이 과태료 10만원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단속<sup>1)</sup> 및 과태료 부과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1일 위반횟수에

1) 위반차량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1개월 주기로 서울시에 통보하고 있으며, 51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 100대를 운영하고 있음.

따른 과태료 부과를 1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를 토대로 과태료<sup>2)</sup> 부과 기준(횟수)을 기존 1일 1회에서 1개월 1회로 완화하기로 하였고 환경부에서는 3개 시·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18.4.4)한 바 있으며, 이에 인천시와 경기도는 2019년 1월 7일, 1월 14일 각각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안 제5조제3항은 환경부 및 3개 시·도 협의결과에 따른 환경부의 조례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환경부 조례개정 요청사항을 반영<sup>3)</sup>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해당 조례를 상당 기간 개정하지 않고 운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며, 관련 서식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음.

---

2) 매 위반시 마다 2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해당 차량에 대해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조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총액 변동은 없음),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과태료는 별도 부과되고 있음.

3)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1개월 간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과태료 부과는 1회만 부과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1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대기정책과”를 “차량공해저감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p> <p>① ~ ②(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일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신 설〉</p>	<p>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1개월 ----- -----.</p> <p>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 <b>운행제한 위반 통지서</b>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명		차대번호	
	총중량(kg)		배기량(cc)	
	운행장소		운행일시	
	단속방법	무인단속시스템, 단속공무원 단속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로 제출(또는 FAX 02-2133-1025)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5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

##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 <b>운행제한 위반 통지서</b>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명		차대번호	
	총중량(kg)		배기량(cc)	
	운행장소		운행일시	
	단속방법	무인단속시스템, 단속공무원 단속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제출(또는 FAX 02-2133-1025)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